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상돈 의원 등 8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9년 4월 9일
- 회부일자 : 2019년 4월 11일

3. 제안사유

- 「공무원연금법」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(시행 2018. 9.21.)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,
- 그 밖에 용어, 문구 등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직무의 범위를 「지방자치법」에 부합하게 개정하고, 유족의 범위를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에 따라 확대함.(안 제2조).
- 나. 상위법령 제·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조항을 정비함. (안 제3, 5조).
 - “공무상재해인정 기준” → “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제5조”
 - “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45조” → “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제40조”
- 다. 용어·문구 정비
 - “구좌” → “계좌” (안 제8조)
 - “지방공사 청주·충주의료원장” → “충청북도 청주·충주의료원장” (안 제9조)
 - “사고가 있을 때에는” →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” (안제12조)
 - “통할한다” → “총괄한다” (안 제12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최영지)

가. 제출배경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에 따라 의원 상해·장애·사망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(시행 2018. 9.21.) 제정·시행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기존 「공무원연금법」에서 삭제하고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옮김에 따라, 현행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, 그 밖에 용어, 문구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 등에 맞게 정비한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**안 제2조제1호**에서는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·상해 등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직무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게 개정함.
 -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에 따르면, 지방의회의원이 **회기 중** 직무(제61조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)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해 생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지방자치법 제34조(상해·사망 등의 보상)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(제61조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)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**회기란** 지방의회가 집회되어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,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례회와 필요한 경우 의원 및 단체장의 요구에 의해 집회되는 임시회가 있음.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의 회기라 함은 이러한 정례회와 임시회를 의미하고 회기 중 직무에는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 중 반드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반드시 의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무수행이 가능함.
- 또한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제1항의 회기 중 직무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1조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가 포함되어 있으며, 동법 제61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 하에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개최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.

지방자치법 제61조(위원회의 개최)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.

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.

- 이러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비추어,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‘직무’의 범위를 살펴보면, ‘직무’를 회기 중 본회의·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·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.
- 즉, ① 회기 중 본회의·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의원으로서의 기타 직무를 수행한 경우와 ② 「지방자치법」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.

- 따라서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 제2조의 직무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의회의원의 법률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 것임.

현 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직무”란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직무”란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도의회”라 한다) 의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가. 회기 중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</p> <p>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</p> <p>다.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도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</p>

-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유족의 범위를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3조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함.

<p>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5. “유족“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가. 배우자(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,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p> <p>나. 자녀(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,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. 이하 같다)</p> <p>다. 부모(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</p> <p>라. 손자녀(孫子女,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,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. 이하 같다)</p> <p>마. 조부모(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</p>
--

○ **안 제3조**는 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를 기존 ‘공무상재해 인정 기준’에서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된 것으로,

- 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가 기존에는 별도의 ‘공무상재해인정 기준’을 준용했었지만, 「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」(시행 2018. 9. 21.)에 규정된 바, 이를 준용토록 개정함.

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(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)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
2.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
3.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
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○ **안 제5조**는 장애 기준에 대한 적용 기준을 개정된 것으로,

기존에는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45조에 따른 “장애등급”을 적용하던 것을,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제40조에 따른 “장해등급”을 적용하도록 개정함.

○ **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**에서는, 기존 “청구자”를 “청구권자”로 개정함.

- “청구자”는 규정된 청구 행위를 수행하는 자를 뜻하며, “청구권자”는 청구의 권한을 가진 자를 뜻하는 용어로,
- 본 조항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뜻하는 “청구권자”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.

-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“구좌”를 순화 용어인 “계좌”로 변경함.
- 안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“지방공사 청주·충주의료원장”을 정확한 용어인 “충청북도 청주·충주의료원장”으로 개정함.
- 안 제12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하고, 부정적 용어인 “사고가 있을때에는”을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”으로 개정함.
- 안 제15조에서는 인용된 조례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부합한 정확한 조례명인 「충청북도 V 각종위원회 V 실비변상조례」로 변경함.
- 별지제1호서식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.

현 행	개정안
첨부서류 1. 사망의 경우 : <u>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, 사망경위서 1부, 사망진단서 1부</u> 2. 장애와 상해의 경우 : 상병 경위서 1부, <u>장애진단서 1부,</u>	첨부서류 1. 사망의 경우 : <u>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사망진단서 1부,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</u> 2. 장애와 상해의 경우 : 상병 경위서 1부, <u>병원진단서 1부(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서 1부),</u>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(시행 2018. 9.21.)의 제정·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, 그 밖에 용어, 문구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 등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